

문서번호	시설안전팀-3140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7.05.24
공개여부	공개

★담당자	차장	건설안전본부장
		05/24
임재근	신종철	김승호
협 조		
감 사		

## 박가네 식당 행정처분 검토 결과보고

2017. 5.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
시설안전팀

# 채소2동 화재사고 관련 박가네 식당 행정처분 검토 결과보고

## 1 화재 사고 개요

- 일 시 : '17. 1. 29.(일) 18:44분경
- 장 소 : 채소2동 박가네 식당 점용 관리 구역
- 사고원인 : 원인 미상
- 피해금액 : 17 백만원(소방서 추산)

## 2 그동안 추진 사항

- '17. 1. 30. : 화재피해 점포 시설물 긴급복구
- '17. 1. 31. : 점포 가설 전기 설치 등 정상 영업 지원
- '17. 2. 2. : 채소시장 화재사고 조치계획 방침
- '17. 2. 20. : 채소시장 화재 피해시설 복구 계획 방침
- '17. 3. 31. : 채소시장 화재 복구공사 완료(공사)
- '17. 4. 20. : 점포 내부시설 복구공사 완료(입주자)

## 3 행정처분 관련 추진 사항

- '17. 3. 28. : 사실확인서 작성
  - 주요내용 : 화재발생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다하겠음
- '17. 3. 29. : 확약서 작성
  - 주요내용 : 화재피해 점포에 대해 복구비 및 재산피해 배상

## 4 행정처분 검토

### □ 행정처분 관련 규정 검토

#### ○ 임대차계약서

- 제18조(계약해지 및 사용제한)
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임대인은 위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

3. 고의 또는 과실로 위 목적물을 멸실 또는 손상하였을 때

#### ○ 시설물운영관리규정

- 제30조(시설사용의 규제)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, 지정의 취소,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# 12. 입주자 과실·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때

- 제35조(위반자 조치) 사장은 입주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근거하여 발하는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별표2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별표2 위반자 처분기준(제35조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나.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

#### 2.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

위반 사항	근거규정	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
11. 입주자의 과실·부주의·관리태만 또는 승인 용도 외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 가. 2개 점포 이상 전소 또는 피해액 2,000만원 초과 나. 피해액 200만원 ~ 2,000만원 미만 다. 피해액 50만원 ~ 200만원 미만 라. 피해액 50만원 미만	제30조 제12호 제13호	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 30일 시설사용 한 15일 시설사용제한 5일	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 30일 시설사용제한 10일	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 15일

### □ 행정처분 : " 시설사용제한 30일 "

**※ 위반사항 : 승인 외 용도 사용(미승인 창고시설)으로 17백만원의 화재 피해 발생**

## □ 행정처분 경감 검토

### ○ 행정처분 경감 근거규정

-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위반자 처분기준

나.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

### ○ 행정처분 경감 검토

- 화재 발화 점포인 박가네에서 시은점포 등 3개 화재 피해 점포에 대해 복구 공사비 및 피해금액을 보상(약 2천만원)
- 신속한 피해 보상으로 화재 피해 점포 내부시설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유통인 영업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

※ 청과시장 대박물산 화재('13.9.6.) 및 채소시장 원남유통 화재('16.1.24.)시 화재 피해점포 배상 지연으로 복구공사 지연은 물론 현재까지 피해 배상 관련 소송 중에 있음

- 최근 5년간 박가네 식당 시설물 관련 행정처분 사항 없음

## 5 행정처분 검토 결과

### □ 행정처분 : " 시설사용제한 15일 "

- 경감 처분 : " 시설사용제한 30일 " ⇒ " 시설사용제한 15일 " (1단계 경감)

- 경감 사유 : 화재 피해 점포 배상으로 복구 공사 조속히 완료하여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였고, 시설물 관련 행정처분 없음

첨 부 : 1. 사실확인서 1부.  
2. 협약서 1부. 끝.